

「시설 사용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18. 11. 19. 개정 판 (시행 2019. 1. 1.) → 2019. 9. 23. 전부개정 판 (시행 2019. 9. 1.)

바뀜 1 · 신설 7 · 삭제 6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155/compare?from=889&to=931>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8:14:29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및 차량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대강당(선교70주년기념관), 보건복지교육관(이종순기념홀), 제2과학관 세미나실, 요한관 강당(홍명기홀), 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 세미나실(장근청홀, 신학관, 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 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② 차량 – 버스	제2조(사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 및 차량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삭제> ② <삭제>
제3조(사용자) ① 시설 및 장소: 사용자는 학교의 허락을 득한 자에 한 한다. ② 차량: 사용자는 교수·직원·학생에 한 한다.	<삭 제>
제4조(주관부서) 시설 및 장소 사용에 관한 책임 부서는 총무과이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장소사용 및 계획 관리 2. 사용 후 시설 관리	<삭 제>
제5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시설 및 장소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1. 시설 및 장소사용료 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공식적인 행사와 정규수업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사용료를 납부 한다. 나. 모든 행사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강당 및 강의실은 8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다. 금요일에 행하는 모든 행사는 15시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모든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 유료 대관 할인 기준 대상 내역 할인 대관 장소 할인 교직원 교직원이 학회 임원으로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 전체 (대학교회, 체육시설, 버스 제외) 50%	<삭 제>

현행	개정안
<u>교단/재단</u> <u>교단/재단 차원의 행사 (예: 한국연합회, 서중한합회)</u> <u>교단소속</u> <u>기관/단체</u> <u>교단 산하의 기관 단체 행사</u> <u>대강당, 세미나실, 보건복지교육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요한관</u> <u>홍명기홀</u> <u>40%</u> <u>공공기관</u> <u>/기타단체</u> <u>1. 교단 산하의 소속 단체 행사</u> <u>2. 지역공공기관의 본교 교육이념과 부합된 행사</u> <u>대강당, 세미나실, 보건복지교육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요한관</u> <u>홍명기홀</u> <u>30%</u> <u>(단위 : 원)</u> <u>시설명</u> <u>사용료</u> <u>추가사용료</u> <u>(시간당초과)</u> <u>냉/난방</u> <u>(일과후/공휴일)</u> <u>비고</u> <u>1일</u> <u>주말(2시간)</u> <u>평일(2시간)</u> <u>대강당</u> <u>2,300석</u> <u>8시간 기준</u> <u>(주3,000,000)</u> <u>(평2,400,000)</u> <u>300,000</u> <u>냉방</u> <u>300,000</u> <u>영상,기자재 등 별도 기준 적용</u> <u>리허설(장비설치 및 철수 포함)</u> <u>시간당 200,000</u> <u>난방</u> <u>300,000</u> <u>보건복지</u> <u>교육관</u> <u>350석</u> <u>600,000</u> <u>400,000</u> <u>100,000</u> <u>냉방</u> <u>200,000</u> <u>리허설 1회</u>	

현 행	개 정 안
<u>100,000</u> <u>난방</u> <u>200,000</u> <u>제2과학관</u> <u>세미나실</u> <u>150석</u> <u>400,000</u> <u>250,000</u> <u>50,000</u> <u>냉방</u> <u>150,000</u> <u>난방</u> <u>150,000</u> <u>요한관</u> <u>홍명기홀</u> <u>450석</u> <u>700,000</u> <u>500,000</u> <u>100,000</u> <u>냉방</u> <u>200,000</u> <u>난방</u> <u>200,000</u> <u>야외행사</u> <u>300,000</u> <u>100,000</u> <u>100,000</u> <u>50,000</u> <u>1일 4건 이내</u> <u>야외예배(안)</u> <u>100,000</u> <u>1일 4건 이내</u> <u>침례당/분수대</u> <u>80,000</u> <u>본 교회 침례식 후 사용할 경우 40,000</u> <u>손님방</u> <u>(코이노니아홀 포함)</u> <u>연회장</u> <u>손님방 관리 내규 따름</u> <u>101호(특실)</u> <u>102-106호</u> <u>인 성</u> <u>교육관</u> <u>침실</u> <u>30,000</u> <u>총 23실</u> <u>이불세탁비용 별도 15,000원</u> <u>강의실(1일)</u>	

현행	개정안
<u>100,000</u> <u>로댐관</u> <u>침실</u> <u>30,000</u> <u>이불세탁비용 별도 15,000원</u> <u>생활교육관</u> <u>침실</u> <u>생활교육관 대관기준에 따름</u> <u>신학관, 체육관,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u> <u>장근청홀, 음악관 합창합주실</u> <u>250,000</u> <u>50,000</u> <u>냉방</u> <u>150,000</u> <u>난방</u> <u>150,000</u> <u>음악관 연습실(레슨실)</u> <u>20,000</u> <u>5,000</u> <u>일반강의실</u> <u>(80명이상)</u> <u>100,000</u> <u>50,000</u> <u>)</u> <u>80,000</u> <u>40,000</u> <u>소(30명)</u> <u>60,000</u> <u>30,000</u> <u>유비쿼터스실</u> <u>(에스라관, 바울관)</u> <u>400,000</u> <u>200,000</u> <u>50,000</u> <u>인성교육수련원</u> <u>(안면도 체육관)</u> <u>구분</u> <u>2시간</u> <u>시간당초과</u> <u>종일</u> <u>냉·난방비 및 전기,상수도비 포함</u> <u>교회 및 기관사용시 50% 할인</u> <u>동절기</u> <u>200,000</u> <u>100,000</u> <u>600,000</u> <u>하절기</u> <u>200,000</u>	

현행	개정안
<u>100,000</u> <u>600,000</u> <u>인성교육수련원</u> <u>(체육관2층 숙소)</u> <u>동절기(12-2월)</u> <u>하절기</u> <u>주말 60,000</u> <u>평일 40,000</u> <u>평일(동) 50,000</u> <u>교직원사용료 무료</u> <u>난방비 1일 2만원, 2일 부터는 1만원</u> <u>체육관(주경기장)</u> <u>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u> <u>운동장(인조잔디구장)</u> <u>테니스장</u> <u>* 기타 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 및 해당</u> <u>회의의 결의에 따른다.</u> <u>2. 차량사용료</u> <u>구분</u> <u>사용거리</u> <u>기준</u> <u>사용료</u> <u>버스</u> <u>100Km 이내</u> <u>1회 사용</u> <u>350,000</u> <u>101Km~200Km</u> <u>1회 사용</u> <u>400,000</u> <u>201Km~300Km</u> <u>1일 사용</u> <u>450,000</u> <u>301Km~400Km</u> <u>1일 사용</u> <u>500,000</u> <u>401Km~500Km</u> <u>1일 사용</u> <u>550,000</u> <u>500Km 초과</u> <u>1일 사용</u> <u>600,000</u> <u>도로비, 주차비는 사용자 부담</u> <u>- 버스는 휴일, 방학 중에만 사용이 가능하다.</u> <u>- 도로교통법규 범칙금 및 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u> <u>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절차) ① 모든 시설 사용허가는 4주 전까지 사무처 총무과에 신청하여 행정협의회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설물, 기타: 대강당, 보건복지기념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홍명기홀, 장근청홀, 체육문화센터, 운동장, 버스 대여 2. 시설 및 장소 사용료: 100만원 이상 3. 행정협의회에서 결의가 필요한 경우 ② 시설사용 1주일 전까지 총무과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한다. ③ 차량 사용은 1주전까지 수송팀에 신청하여, 사용 전·후 요금을 정산한다.	<삭 제>
제7조(인건비지출) 주말 등 근무시간 이후에 행하는 행사의 인건비 지급은 별도로 정한다.	<삭 제>
제8조(기타) 기타 사항은 행정협의회에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3조(관리) 본교의 시설 사용에 관한 제반 업무는 별도의 담당부서를 정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사무처 총무인사팀에서 관장한다.
<신 설>	제4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학생, 교직원 또는 외부단체에서 본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양식에 행사명, 행사일시, 행사내용 및 대상인원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시설사용료가 100만원 이상, 행정협의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협의회 결의 후 사용을 승인한다. ② 외부단체에서 사용은 면학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사용자의 의무) 본교 시설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 목적이의 사용금지 2. 사용기간 및 시간 엄수 3. 질서 유지, 집기비품 및 시설 파괴행위 금지 4. 기타 본교에서 지시하는 사항
<신 설>	제6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시설 및 장소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②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와 정규수업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시설사용료, 냉·난방비, 청소료 등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사용자가 본교의 학생, 교직원, 동문회, 본교 부속기관의 행사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사용 전에 절차에 따라 재무실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 대관 할인 기준과 시설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현행	개정안
	<u>표는 별도 첨부 (시설사용 할인 기준, 시설 및 장소 사용료, 차량사용료)</u>
<신 설>	제7조(사용료 위약금) 사용자가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u>우천, 폭설 등 천재지변 및 건물 내 화재 또는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학교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u> 2. <u>위약금 - 1번의 경우처럼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환불이지만 그 외의사적인 사항으로 시설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면 7일전 10%, 해당주 50%, 당일 환불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이 내용은 대관신청서에 기재 한다.</u> 3. <u>본 대학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100%를 환불 할 수 있다.</u>
<신 설>	제8조(손해배상) ① <u>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u> <u>시설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u> ② <u>사용자는 대관 관련 행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하며 본 대학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u>
<신 설>	제9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거나 행정협의회에서 정한다. ≡ 유료 대관 할인 기준 <u>대상</u> <u>내역</u> <u>할인 대관 장소</u> <u>할인</u> <u>교직원</u> <u>교직원이 학회 임원으로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 전체 (대학교회, 체육시설, 버스 제외)</u> 50% <u>교단/재단</u> <u>교단/재단 차원의 행사 (예: 한국연합회, 서중한협회)</u> <u>교단소속</u> <u>기관/단체</u> <u>교단 산하의 기관 단체 행사</u> <u>대강당, 세미나실, 보건복지교육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요한관</u> <u>홍명기홀</u> 40% <u>공공기관</u> <u>/기타단체</u> 1. <u>교단 산하의 소속 단체 행사</u>

현행	개정안
	2. 지역공공기관의 본교 교육이념과 부합된 행사 대강당, 세미나실, 보건복지교육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요한관 홍명기홀 30% (단위 : 원)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일과후/공휴일) 비고 1일 주말(2시간) 평일(2시간) 대강당 2,300석 8시간 기준 (주3,000,000) (평2,400,000) 300,000 냉방 300,000 영상,기자재 등 별도 기준 적용 리허설(장비설치 및 철수 포함) 시간당 200,000 난방 300,000 보건복지 교육관 350석 600,000 400,000 100,000 냉방 200,000 리허설 1회 100,000 난방 200,000 제2과학관세미나실 신학관 배창현기념관 장근청홀 150석 190석 400,000 250,000 50,000 냉방

현행	개정안
	<u>150,000</u> <u>난방</u> <u>150,000</u> <u>요한관</u> <u>홍명기홀</u> <u>450석</u> <u>700,000</u> <u>500,000</u> <u>100,000</u> <u>냉방</u> <u>200,000</u> <u>난방</u> <u>200,000</u> <u>야외행사</u> <u>300,000</u> <u>100,000</u> <u>100,000</u> <u>50,000</u> 1일 4건 이내 행사 인원, 행사성격에 따라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청소요금 별도 부과 (10만원≡ 30만원) 야외예배(안) <u>100,000</u> 1일 4건 이내 침례탕/분수대 <u>80,000</u> 본 교회 침례식 시 <u>40,000</u> 손님방 (코이노니아홀 포함) 연회장 손님방 관리 내규 따름 101호(특실) 102-106호 인성 교육관 침실 <u>30,000</u> 총 23실 이불세탁비용 별도 15,000원 강의실(1일) <u>100,000</u> 로댐관 침실 <u>30,000</u> 이불세탁비용 별도 15,000원 생활교육관 침실 생활교육관 대관기준에 따름

현행	개정안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u>250,000</u> <u>250,000</u> <u>50,000</u> 냉방 <u>150,000</u> 난방 <u>150,000</u> 음악관 연습실(레슨실) <u>20,000</u> <u>20,000</u> <u>5,000</u> 일반강의실 (80명이상) <u>100,000</u> <u>100,000</u> <u>50,000</u> 냉방 150,000 난방 150,000) <u>80,000</u> <u>80,000</u> <u>40,000</u> 소(30명) <u>60,000</u> <u>60,000</u> <u>30,000</u> 유비쿼터스실 (에스라관, 바울관) <u>400,000</u> <u>200,000</u> <u>200,000</u> <u>50,000</u> 인성교육수련원 (안면도 체육관) 구분 <u>2시간</u> 시간당초과 종일 냉·난방비 및 전기,상수도비 포함 교회 및 기관사용시 50% 할인 동절기 <u>200,000</u> <u>100,000</u> <u>600,000</u> 하절기 <u>200,000</u>

현행	개정안
	<u>100,000</u> <u>600,000</u> <u>인성교육수련원</u> <u>(체육관2층 숙소)</u> <u>동절기(12-2월)</u> <u>하절기</u> <u>주말 60,000</u> <u>평일 40,000</u> <u>평일(동) 50,000</u> <u>교직원사용료 무료</u> <u>난방비 1일 2만원, 2일부터는 1만원</u> <u>체육관(주경기장)</u> <u>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u> <u>운동장(인조잔디구장)</u> <u>테니스장</u> <u>* 기타 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 및 해당</u> <u>회의의 결의에 따른다.</u> <u>2. 차량사용료</u> <u>구분</u> <u>사용거리</u> <u>기준</u> <u>사용료</u> <u>버스</u> <u>100Km 이내</u> <u>1회 사용</u> <u>450,000</u> <u>101Km~200Km</u> <u>1회 사용</u> <u>500,000</u> <u>201Km~300Km</u> <u>1일 사용</u> <u>550,000</u> <u>301Km~400Km</u> <u>1일 사용</u> <u>600,000</u> <u>401Km~500Km</u> <u>1일 사용</u> <u>650,000</u> <u>500Km 초과</u> <u>1일 사용</u> <u>700,000</u> <u>(참고: 휴일 정규직 인건비(1인기준) 20만원)</u> <u>- 버스는 휴일, 방학 중에만 사용이 가능하다.</u> <u>- 도로교통법규 범칙금 및 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u> <u>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시설 사용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모든 시설 및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 및 차량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②

제3조(관리) 본교의 시설 사용에 관한 제반 업무는 별도의 담당부서를 정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사무처 총무인사팀에서 관장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학생, 교직원 또는 외부단체에서 본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양식에 행사명, 행사일시, 행사내용 및 대상인원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시설사용료가 100만원 이상, 행정협의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협의회 결의 후 사용을 승인한다.

② 외부단체에서 사용은 면학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본교 시설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 목적이외 사용금지
2. 사용기간 및 시간 엄수
3. 질서 유지, 집기비품 및 시설 파괴행위 금지
4. 기타 본교에서 지시하는 사항

제6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시설 및 장소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②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와 정규수업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시설사용료, 냉·난방비, 청소료 등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사용자가 본교의 학생, 교직원, 동문회, 본교 부속기관의 행사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사용 전에 절차에 따라 재무실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 대관 할인 기준과 시설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표는 별도 첨부 (시설사용 할인 기준, 시설 및 장소 사용료, 차량사용료)

제7조(사용료 위약금) 사용자가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우천, 폭설 등 천재지변 및 건물 내 화재 또는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학교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2. 위약금 - 1번의 경우처럼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환불이지만 그 외의사적인 사항으로 시설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면 7일전 10%, 해당주 50%, 당일 환불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이 내용은 대관신청서에 기재 한다.
3. 본 대학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100%를 환불 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시설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대관 관련 행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하며 본 대학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거나 행정협의회에서 정한다.

≡ 유료 대관 할인 기준

대상

내역

할인 대관 장소

할인

교직원

교직원이 학회 임원으로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

전체 (대학교회, 체육시설, 버스 제외)

50%

교단/재단

교단/재단 차원의 행사 (예: 한국연합회, 서중한협회)

교단소속

기관/단체

교단 산하의 기관 단체 행사

대강당, 세미나실, 보건복지교육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요한관 홍명기홀

40%

공공기관

/기타단체

1. 교단 산하의 소속 단체 행사

2. 지역공공기관의 본교 교육이념과 부합된 행사

대강당, 세미나실, 보건복지교육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요한관 홍명기홀

30%

(단위 : 원)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일과후/공휴일)

비고

1일

주말(2시간)

평일(2시간)

대강당

2,300석

8시간 기준

(주3,000,000)

(평2,400,000)

300,000

냉방

300,000

영상,기자재 등 별도 기준 적용

리허설(장비설치 및 철수 포함)

시간당 200,000

난방

300,000

보건복지

교육관

350석

600,000

400,000

100,000

냉방

200,000

리허설 1회 100,000

난방
 200,000
 제2과학관세미나실
 신학관 배창현기념관
 장근청홀
 150석≡
 190석
 400,000
 250,000
 50,000
 냉방
 150,000
 난방
 150,000
 요한관
 홍명기홀
 450석
 700,000
 500,000
 100,000
 냉방
 200,000
 난방
 200,000
 야외행사
 300,000
 100,000
 100,000
 50,000
 1일 4건 이내
 행사 인원 , 행사성격에 따라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청소요금 별도 부과 (10만원≡ 30만원)
 야외예배(안)
 100,000
 1일 4건 이내
 침례탕/분수대
 80,000
 본 교회 침례식 시 40,000
 손님방
 (코이노니아홀 포함)
 연회장
 손님방 관리 내규 따름
 101호(특실)
 102-106호
 인 성
 교육관
 침실
 30,000

총 23실
 이불세탁비용 별도 15,000원
 강의실(1일)
 100,000
 로템관
 침실
 30,000
 이불세탁비용 별도 15,000원
 생활교육관
 침실
 생활교육관 대관기준에 따름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250,000
 250,000
 50,000
 냉방
 150,000
 난방
 150,000
 음악관 연습실(레슨실)
 20,000
 20,000
 5,000
 일반강의실
 (80명이상)
 100,000
 100,000
 50,000
 냉방 150,000
 난방 150,000
)
 80,000
 80,000
 40,000
 소(30명)
 60,000
 60,000
 30,000
 유비쿼터스실
 (에스라관, 바울관)
 400,000
 200,000
 200,000
 50,000
 인성교육수련원
 (안면도 체육관)

구분
 2시간
 시간당초과
 종일
 냉·난방비 및 전기,상수도비 포함
 교회 및 기관사용시 50% 할인
 동절기
 200,000
 100,000
 600,000
 하절기
 200,000
 100,000
 600,000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2층 숙소)
 동절기(12-2월)
 하절기
 주말 60,000
 평일 40,000
 평일(동) 50,000
 교직원사용료 무료
 난방비 1일 2만원, 2일부터는 1만원
 체육관(주경기장)
 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 기타 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 및 해당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2. 차량사용료

구분
 사용거리
 기준
 사용료
 버스
 100Km 이내
 1회 사용
 450,000
 101Km~200Km
 1회 사용
 500,000
 201Km~300Km
 1일 사용
 550,000
 301Km~400Km
 1일 사용
 600,000
 401Km~500Km

1일 사용

650,000

500Km 초과

1일 사용

700,000

(참고: 휴일 정규직 인건비(1인기준) 20만원)

- 버스는 휴일, 방학 중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도로교통법규 범칙금 및 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